

##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### [ 기본 의무 ]

기관은 수급자(보호자)와의 계약체결 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.

- ① 기관 일반정보, 제공 서비스 유형, 서비스 시간, 횟수, 비용부담, 제도 설명, 등급 등에 관한 사항
- ② 기관에서 계약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(보호자)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.
- ③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(보호자)와 사전 협의 하에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.

### [ 계약 기간 ]

1. 본 기관의 계약 기간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에 표기된 인정 유효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.
2. 계약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해지요구가 있을시 에 는 계약 종료가 된다.
3. 등급변동 또는 인증서 갱신으로 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.

### [ 계약목적 ]

노인복지법·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서비스를 제공하고, 이에 수급자 본인이나 보호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.

1.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
2.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
3.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

### [ 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 부담금 ]

※ 월 한도액 초과 금액은 100% 본인 부담으로 함.

#### ▶ 2026년 재가급여(방문요양) 장기요양 등급별 월 한도액

(단위 : 원)

| 장기요양등급 | 1등급       | 2등급       | 3등급       | 4등급       | 5등급       | 인지지원등급  |
|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|
| 월 한도액  | 2,512,900 | 2,331,200 | 1,528,200 | 1,409,700 | 1,208,900 | 676,320 |

#### ▶ 2026년 방문요양(방문시간당) 이용료

(단위 : 원)

| 분류      | 기본 수가(100%) | 일반(15%) | 감경(9%) | 감경(6%)<br>의료(6%) | 기초(0%) |
|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30분 이상  | 17,450      | 2,618   | 1,571  | 1,047            | 0      |
| 60분 이상  | 25,320      | 3,798   | 2,279  | 1,519            |        |
| 90분 이상  | 34,120      | 5,118   | 3,071  | 2,047            |        |
| 120분 이상 | 43,430      | 6,515   | 3,909  | 2,606            |        |
| 150분 이상 | 50,640      | 7,596   | 4,558  | 3,038            |        |
| 180분 이상 | 57,020      | 8,553   | 5,132  | 3,421            |        |
| 210분 이상 | 63,530      | 9,530   | 5,718  | 3,812            |        |
| 240분 이상 | 70,080      | 10,512  | 6,307  | 4,205            |        |

### 【 준수사항 】

-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.
-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양식으로 한다.  
(단, 계약서에는 기간, 급여종류, 급여비용, 비급여, 개인정보보호, 분쟁 해결, 손해 배상 등을 포함)

### 【 이용료 납부 】

- ①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,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.
- ②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,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으로 제공한다.
- ③ 센터는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초 일에 정산하고 수급자에게 매월 초 문자 메시지로 이용 명세서를 전송한다. (부득이한 경우 사회복지사 방문 시 별지24호 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명세서를 전달한다.)
- ④ 수급자는 매월 이용료를 청구일로부터 10일 안에 센터에 납부한다. 납부일이 공휴일인 우 익일로 한다.
- ⑤ 본인 부담금은 센터에서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 한 경우 사회복지사를 통해서 현금으로 납부할 수도 있다.

### 【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】

1. 신원인수인의 권리,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.
- ① 신원인수 방법 : 방문요양, 방문목욕 서비스의 경우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신원 인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.
- ②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: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, 인수인계에 철저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.

### 【 신원인수인의 권리 】

-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.
- ②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계획 및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.
- ③ 수급자의 신체수발 및 요양범위 안에서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④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수 있다.
- ⑤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.
- ⑥ 다양한 서비스에 관련하여 타기관과의 서비스 연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.
- ⑦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서비스 일정 등을 변경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.
- ⑧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.
- ⑨ 수급자에 대한 건강, 식사, 생활상담, 조연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.
- ⑩ 수급자가 생활하는 공간이 청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.

#### [ 신원인수인의 의무 ]

-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 등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.
-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(본인부담금)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 및 납부하여야 한다.
- ③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- ④ 신원인수인의 주소, 연락처, 주보호자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- ⑤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하여야 한다.
- ⑥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, 간호 및 간병, 입·퇴소 절차, 비용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.
- ⑦ 수급자 어르신이 혼자서 신체활동이 어렵거나 일상생활이 현저히 어려워 혼자서 식사 등이 어려울 때는 수급자 어르신의 케어를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, 후 요양요원과 인수, 인계하여 어르신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.
- ⑧ 기타 서비스 이용 규칙 이행 및 협조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.

#### [ 계약의 해제 ]

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할 때는 수급자(보호자)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.

1.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2. 수급자의 건강진단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명될 때
3.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